

누수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의 인정범위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을 중심으로 -

김 혜 영*

<차례>

- | | |
|-------------------|---------------------------------|
| I. 들어가며 | IV. 누수사고에 관한 손해방지의무 관련 쟁점 |
| II. 대상판결의 검토 | V. 누수사고와 관련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대한 실무례 |
| III. 누수사고와 손해방지비용 | VI. 나가며 |

주제어 : 누수사고, 손해방지비용, 손해방지의무, 책임보험, 손해확대방지

<국문초록>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 특약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이 누수사고가 발생하면 배관교체나 방수층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하급심마다 결론을 달리하고 있었으나,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은 누수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2021다201085, 201092 판결도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방지비용의 인정범위를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기본적으로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계약자측이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손해방지비용의 인정범위는 보험계약자측의 손해방지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손해방지의무의 요건, 책임보험의 성질, 상법 제678조와의 관계 등 관련법리에 도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피보험자가 누수

* 법률사무소 광화 소속 변호사.

- 논문접수일(2023.10.04), 심사개시일(2023.10.19), 게재확정일(2023.11.05)

지점과 누수원인을 탐지하고 수도꼭지를 잠그고 아랫집 천정쪽에 임시로 물받이를 설치하면 더 이상의 누수피해가 발생할 위험은 소멸되므로 그 시점에서 손해방지의무도 종료되는 것이고 그 후 장차 발생할 아랫집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하여 배관교체나 방수층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피보험자 본인의 물건에 대한 수리비용 또는 향후의 사고예방비용이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보험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I. 들어가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 특약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이 누수사고가 발생하면 배관교체나 방수층 보수 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축조된지 30~40년이 지난 주택은 배관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상태여서 배관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피보험자들은 노후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누수부위의 수리비용을 손해방지비용 명목으로 청구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관 전체의 교체공사비용을 보상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그동안 누수사고에 대한 손해방지비용의 인정범위에 대하여는 하급심판결만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본고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누수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함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대상판결의 검토

1. 사실관계

(1)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에 관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에는 담보내용으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그 시설이 산후조리원인 경우 “대물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절. 배상책임보장 공통조항”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배상책임조항 공통조항

제10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보험기간중인 2019. 2. 26. 14:00경 본 건 체력단련장의 남자샤워실과 여자샤워실 바닥의 방수층이 손상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중 여자샤워실 바닥의 방수층이 손상되어 생긴 누수로 인하여 그 아래층인 당구장의 천장으로 물이 새는 수침피해가 발생하였다.

(3) 피고는 누수사고 직후부터 같은해 3. 18.경까지 방수공사업자를 통하여 체력단련장의 남자샤워실 및 여자샤워실 바닥의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고 한다)를 하고, 방수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누수 정밀검진비용은 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여자샤워실 바닥 방수공사비용은 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다.

(4) 피고는 2019. 5.경 원고에게 누수사고로 인한 방수공사비용으로 7,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면서 약관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그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방수공사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7,000,000원은 본 건 체력단련장의 보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뿐, 보험약관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누수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

(2) 피고의 주장

누수사고로 인하여 당구장의 천정으로 물이 새는 수침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당구장의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공사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이므로, 방수공사비용으로 지출한 7,000,000원은 약관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방수공사 비용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송의 경과

(1) 1심의 판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103590, 106315 판결)

상법 제680조 제1항과 약관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등 참조).

누수사고중 여자사위실 바닥의 방수층이 손상되어 생긴 누수로 인하여 2019. 2. 26. 14:00경 당구장의 천정으로 물이 새는 수침피해가 발생하였고 당구장 운영자는 피고에게 방수공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방수공사업자를 통하여 방수공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누수사고로 인한 수침피해가 발생하여 방수공사를 지체할 경우 수침피해가 확산되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당구장운영자의 손해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방수공사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방수공사비용중 누수 정밀검진비용과 여자사위실 방수공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남자사위실 방수공사비용은 누수사고로 인한 수침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남자사위실 방수공사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손해가 방지 또는 경감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체력단련장을 보수한 것으로서 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자인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없다.

피고가 지출한 방수공사비용 중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누수 정밀검진비용 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여자사위실 방수공사용 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서 합계 3,600,000원인데, 피고가 지출한 비용중 327,272원(= 3,600,000원 × 1/11)은 부가가치세이고 이는 향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피고의 매입세액에 포함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327,272원은 보험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인정되는 보험금의 액수는 3,272,728원(= 3,600,000원 - 327,272원)이 된다.

(2) 항소심의 판단(부산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51535, 51542 판결)

항소심 판결은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였고, 원고가 '피고가 방수공사를 실시한 것은 상법 제657조 제1항, 제722조에 정한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는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점에 대하여 방수공사비용이 원고에 대한 보험사고 또는 배상청구 통지를 해태하여 증가된 손해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판단을 추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 서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서는 건축물 등에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비로소 보상 대상이 된다. 누수 부위나 원인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의 형태와 범위도 다양하다. 또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방수공사에는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누수를 임시적으로 막거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 향후 추가적인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나 교체 작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방수공사의 세부작업 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가 실시된 경우 방수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체력단련장의 여자샤워실 바닥의 방수공사를 지체할 경우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아 위 방수공사 비용과 누수 정밀검진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검토

대법원 2021다201085, 201092 판결은 누수탐지비용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의 여자사위실 방수공사비용까지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여자사위실의 방수층 손상으로 인한 당구장의 수침피해는 피보험자의 체력단련장 여자사위실로 연결된 수도배관의 밸브를 잠그고 당구장 천정에 물받이를 설치하면 더 이상 발생, 확대되지 않으므로 남자사위실 뿐만 아니라 여자사위실의 방수층 공사비용 모두 앞으로 새롭게 발생할 당구장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고예방비용일뿐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도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앞으로 발생할 누수사고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여자사위실 방수층 보수공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대법원 판결은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법리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에 드는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방수공사비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실시하였고, 위 대법원 판결은 1회성 누수사고에 대한 판단이지 배관이 전체적으로 노후되어 특정부분을 수리한 후 또 다시 다른 부위에서 누수사고가 반복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노후된 배관교체 공사비용이나 방수층 공사비용을 모두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된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다.

Ⅲ. 누수사고와 손해방지비용

1. 책임보험과 손해방지비용

상법 제680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은 보

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손해보험의 통칙 부분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책임보험에도 적용되지만,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므로(상법 제719조), 책임보험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은 기본적으로 제3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비용이어야 한다.

화재사고와 달리 누수사고에서는 천장에서 물이 조금만 새도 아랫집에서 그 즉시 이를 인지하고 윗집에 누수방지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것이므로 아랫집 거주자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인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보다 피보험자 본인의 물건 수리비를 더 많이 보상하는 것은 책임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이는 책임보험이 피보험자의 재물 수리비용을 보상해 주는 재물보험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책임보험자의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하는 물건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응하는 보험료를 받지 않고 위험만 인수하는 결과가 되는 문제가 있다.

2. 손해방지비용과 상법 제678조의 관계

건물이나 기계, 시설, 집기 등은 계속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 즉 사용손모가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비용으로 담보하여 준다면 배상책임을 인수한 책임보험자가 건물이나 기계, 시설, 집기 등의 수리에 대한 보증책임을 떠맡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상법 제678조에서는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재물보험에만 적용되는데,¹⁾ 노후된 건물의 배관이나 방수층의 파손, 외벽의 균열, 외벽 창문의 코킹 노후화 등으로 인한 누수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이고, 이러한 손해는 본래 재물보험에서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데, 피보험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자연소모로 인한 재물손해를 손해방지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보상받는 셈이 되어 상법 제678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1) 책임보험에서 말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피보험자가 지는 책임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학설은 상법 제678조는 책임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손해방지의무의 시기와 종기

손해방지의무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사고의 현실적인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손상을 입는 것으로부터 보험목적물을 보전 또는 방위 하거나 이미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피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우리 판례도 상법 제680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6663 판결).

보험계약자측의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생긴 때부터 그 의무가 발생한다. 단순히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것은 손해방지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²⁾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자측이 지출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본다면, 예컨대 화재대물배상책임 담보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노후된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수리, 교체하는 비용을 보험자가 보상해야 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사유지가 움푹 패여 있어서 지나가는 행인이 다칠 수 있다는 이유로 피보험자가 바닥 보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청구할 수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 전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상법 제659조 소정의 사고발생에 관한 고의, 중과실 여부, 상법 제652조, 제653조의 통지의무 위반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여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고의의 부작위 또는 중과실로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것이지(상법 제659조) 손해방

2) 박세민,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15, 425면.

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³⁾ 그에 따라 보험자의 손해방지비용 지급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손해방지의무는 이미 발생한 사고의 확대를 더 이상 막을 수 없거나 줄일 수 없는 경우에 종료된다. 그후에는 피보험자의 활동으로 장차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활동으로 인한 비용은 간접 비용으로서 보험계약자측이 부담할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의 생성을 임시적으로나마 단절시켰다면 그후의 비용은 사고예방비용으로서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⁴⁾

학계에서는 누수피해의 지속 또는 확대를 막기 위한 밸브장치 잠금, 물받이 설치, 배수펌프의 활용, 건조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고, 추가사고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배관교체, 방수처리, 시설의 원상복구 비용은 그것이 이미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시설 소유, 관리자로서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출할 책임이며 이를 방임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고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⁵⁾

한편 학설중에는 손해의 확대방지, 경감을 위한 비용과 장차 발생할 누수사고의 예방을 위한 비용은 개념상 구분되고, 손해의 확대방지과 경감을 위한 비용은 현재 발생하고 진행되는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는 비용을 말하며 이는 상황적 긴급성과 공간적 최소 필요성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면서, 사고지점을 제외한 그밖의 원인소재를 파악하여 제거하는 것에 충당되는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라 예방비용에 해당되지만, 누수탐지비용과 누수의 직접원인을 제거하는 데에 필요한 배관의 수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된다는 견해가 있고⁶⁾ 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사고와 관련한 손해방지비용의 인정범위에 대한 다툼은 개별 보험약관에서 어떤 비용을 전보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라

3)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4, 232면.

4) 김선정,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30집 제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7, 227면.

5) 김선정, 앞의 논문, 230면.

6) 이성남,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136면.

고 하면서 그 인정기준을 배상책임보험 약관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⁷⁾

살피건대 누수사고에서는 아랫집으로 물이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손해가 현실화한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누수지점과 누수원인을 탐지하고 주방이나 욕실의 용수사용을 중단한 다음 배수하는 순간 추가로 공급되는 물이 없으므로 그때부터는 그 전에 이미 콘크리트 슬라브가 머금고 있던 물이 아랫집으로 떨어지는 피해만 추가될 뿐, 더 이상의 누수피해가 발생할 위험은 소멸된다.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는 주방이나 욕실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배수를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이미 콘크리트 슬라브에 스며든 함수(含水)가 아랫집으로 떨어져 각종 가재도구를 적시는 등의 손해의 ‘확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조치는 아랫집 천정쪽에 임시로 물받이를 설치하는 등의 긴급하고도 직접적인 조치에 한정된다. 이러한 임시조치를 하면 파손된 배관 또는 바닥의 방수층 균열 부분과 같이 누수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수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미 발생한 누수사고’로 인해서는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손해방지의무 역시 그 시점에서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4. 손해방지의 긴급성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에서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손해의 방지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보험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은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상법 제6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7) 조규성,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인정범위에 관한 고찰-누수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결정을 중심으로”, 「법과기업연구」 제11권 제3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173면.

약관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방지의무의 인정요건으로 ‘긴급성’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학계에서도 손해방지경감비용의 인정은 긴급성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서, 누수사고는 수일이나 수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방울방울 쌓여서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를 감지하였을 때는 사고가 발생한 지 수일이 지난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누수지점인 피보험자의 집을 보수하는 비용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은 배상책임의 범리वाद도 맞지 않고 손해방지비용의 긴급성과도 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⁸⁾

이와 같이 ‘긴급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누수사고에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방지비용은 누수원인을 막는 최소비용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단계로 손해확대의 원인을 제어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행하고 임시로 손해발생이 정지되었다면 손해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재발생의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고, 2단계로 피보험자의 자택을 수리하는 것은 피보험자 스스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수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⁹⁾ 이러한 긴급성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배관교체공사비와 방수층 보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5.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효과

통설은 계약자측이 고의, 중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고,¹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즉 의무 위반이 없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거

8) 김현태/이경재, “누수사고의 보험보상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4., 478면.

9) 김화중,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 범위에 대한 검토-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35권 제3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22. 9., 69면.

10) 박세민, 앞의 책, 430면; 양승규, 앞의 책, 234면; 유주선, 「보험법」, 청목출판사, 2013, 307면;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9판, 박영사, 2015, 230면; 최기원,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02, 313면; 한기정,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21, 533면.

나 지급할 보험금과 상계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경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계약자측에 손해방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중과실이 있을 경우,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방지,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손해액을 계약자측에 배상청구하거나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손해방지의무의 인정시기를 앞당기고 중기를 연장하는 것이 꼭 계약자측에 유리한 것만도 아니다.

누수사고의 경우에도 누수방지를 위한 임시조치를 끝낸 시점에 손해방지의무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후에 이루어지는 배관교체나 방수층 보수공사비용까지 손해방지비용으로 본다는 것은 배관교체나 방수층 보수공사까지 손해방지의무에 포함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계약자측이 배관교체나 방수층 보수공사를 하지 않은 데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¹¹⁾, 보험자는 누수사고의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배관교체공사비나 방수층 보수공사비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그 경우 피해자는 지급받지 못한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직접 배상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 누수사고 피해자에게는 책임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지급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에게 배관교체나 방수층 보수공사비용 상당액을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IV. 누수사고에 관한 손해방지의무 관련 쟁점

1. 보험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손해방지의무에 포함되는지

계약자측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후에 그로 인한 손해를 방지, 경감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보험사고의 발생 자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손해방지비용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방지의무도 발생하지

11) 노후주택이고 아랫집에서 피보험자에게 누수발생 통보를 여러번 한 전력이 있다면 손해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중과실을 인정하기 용이할 것이다.

않고 그에 따라 보험자의 비용부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¹²⁾

누수사고의 경우, 계약자측이 1차 누수사고 발생후 밸브잠금, 물받이 설치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시점에 1차 누수사고로 인한 아랫집의 손해발생은 중단되고, 이 시점에 1차 누수사고에 대한 손해방지의무는 종료된다. 그후 계약자측이 배관교체공사나 방수층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밸브를 열고 물을 쓰기 시작하면 아랫집에 추가 누수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정은 계약자측이 당연히 알고 있고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계약자측이 1차사고 후에 배관교체공사나 방수층 보수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쓰는 바람에 2차 누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2차사고는 계약자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서 보험자는 상법 제659조 제1항 소정의 계약자측의 고의, 중과실을 이유로 보상책임을 면하고, 그에 따라 계약자측이 지출한 배관교체나 방수층 보수 공사비도 손해방지비용 명목으로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은 상태의 의미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은 ‘상법 제680조 제1항 또는 보통약관 제5조,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도 그 때부터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는 생겨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누수사고의 경우 파손된 배관 부위나 방수층을 수리하지 않으면 또 다시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은 상태가 생긴 것으로 보아 배관교체공사와 방수층 보수 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 박세민, 앞의 책, 423면.

대법원 2003다6958 판결은 피보험자인 레미콘공급업자가 공급한 레미콘을 이용하여 건물의 지하벽면을 시공하였는데 그중 일부 구간이 양생이 되지 않아 규정강도가 나오지 않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다음에 예정된 철근, 목공 등의 작업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콘크리트 하자 부분이 지하 벽면을 구성하고 있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건물의 붕괴 등 건물 안전상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레미콘공급업자가 공사업체에 현장의 경화 불량 콘크리트를 떼어내고 다른 콘크리트로 대체·시공하는 보수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지연으로 인해 손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수공사업체에 초속경 시멘트를 사용하고 야간작업도 병행할 것을 요청한 사안에서,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공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초속경 시멘트사용, 야간공사)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아 보험자의 보상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003다6958 판결은 피보험자가 보수공사비로 지출한 금원중 32,733,600원(보통의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대체·시공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생산물인 레미콘의 하자에 의한 레미콘 자체의 손해이거나 또는 하자 있는 레미콘의 회수수리·대체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보험계약의 생산물 특별약관 제2조에 규정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위 금원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보수공사의 방치나 지연으로 인해 시공대상 건물이 붕괴되는 위험을 상정해 보면, 위 보수공사비중 나머지 40,266,400원(73,000,000원 - 32,733,600원)은 단순히 하자있는 레미콘 자체의 회수대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하자있는 레미콘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기성 부분이 붕괴됨으로써 시공사에게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약관규정에 따라 위 40,266,400원에서 자기부담금 1,000,000원을 뺀 39,266,4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보험자가 양생되지 않는 콘크리트 벽면을 보수하지 않으면 건물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실제로 건물붕괴로 인하여 제3자가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발생이 거의 예정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위험한 상태가 발생한 것이므로 대법원이 이 경우에는 보험사고(건물붕괴로 인한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계약자측의 손해방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누수사고는 레미콘불량사고와 다르다. 레미콘불량으로 건물이 붕괴되어 제3자가 피해를 입는 사태를 신속하게 막기 위해서는 초속경 시멘트, 야간공사가 필요하지만, 누수사고로 인한 아랫집의 피해를 신속하게 막기 위해서는 밸브를 잠그고 물받이를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배관을 교체하고 방수층을 보수하여야만 아랫집으로 물이 떨어지는 것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수사고의 경우 배관교체나 방수층 보수 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긴 것이라고 보아 그 보수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필요비나 유익비의 개념 측면에서 손해발생을 저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의 궁극적인 이익이 보험자에게 귀속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사고발생 예방조치에 소요된 경비도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¹³⁾ 보험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를 과도하게 확장하면 건물이나 시설의 노후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일상적인 보수행위조차 손해방지행위로 취급될 수 있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기초로 하여 보험요율을 정하는데,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누수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관교체나 방수층 수리 비용을 손해방지비용 명목으로 보상한다면 이는 보험자에게 책임보험 인수 당시 예측한 위험률을 훨씬 초과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 긴급하고 필요불가결한 수리를 제외한 다른 일반적인 수리, 보수행위로 인한 비용까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게 되면 책임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소유, 점유하는 건물이나 기타 물건에 대한 수리비용을 보상하는 일종의 물건보험의 성격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하고,¹⁴⁾ 물건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자연손모의 경우까지 보상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어 보험법리는 물론 형평에도 어긋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13) 박인호, “손해방지의무와 손해방지·경감비용에 대한 고찰: 책임보험을 중심으로”, 「보험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147면.

14) 김화중, 앞의 논문, 61면.

3. 누수사고에 있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험자가 실시한 배관교체나 방수층 보수 공사는 앞으로 피보험자가 난방을 하거나 물을 사용할 경우 용수가 배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누수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 이미 발생한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하고도 직접적인 조치가 아니므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20-7호 조정결정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특약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래층에 누수사고가 발생하자 피보험자가 수리업체에 피해 아파트 욕실천정 부분의 환풍기와 조명 등의 수리비 58만원을 지급하였고, 수리업체가 누수원인을 탐지한 결과 피보험자의 자택에 있는 온수배관의 분배기가 파열된 것이 누수원인으로 확인되자 피보험자가 분배기를 수리하고 수리업체에 누수탐지 및 배관공사 비용 명목으로 40만원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피해아파트의 수리비 58만원을 청구하면서 피보험자의 자택 수리비용 40만원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누수원인인 온수배관 분배기를 수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행위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보험회사의 주장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보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자택 수리비 40만원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위 분쟁조정결정에서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과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을 인용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살피건대, 대법원 2002다22106 판결은 님시터 운영자가 망인에게 님시터 주변도로의 평지작업과 준설도의 정리작업을 맡겼고 망인이 위 작업을 위하여 운전하던 굴삭기가 물속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님시터 운영자가 망인을 병원에 후송하면서 지출한 응급후송비와 치료비는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되고 유족과 소송을 진행하면

서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상법 제720조 제1항 소정의 '방어비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회사에 이를 청구한 사안에서, '상법 제680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 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위 법조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후, 닙시터 운영자가 지출한 응급후송 및 치료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4다64272 판결은 소외회사가 사고로 인하여 유출된 다량의 유류가 인근 저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자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방제업자와의 사이에 소송을 진행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본인이 지출한 방제작업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방제작업을 지체할 경우 오염이 확산되어 그로 인한 제3자의 손해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손해의 경감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그 비용에 관하여 방제업자와 사이에 제기된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함으로써 방제작업 비용과 변호사선임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이러한 비용은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¹⁵⁾

15) 변호사보수는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라 상법 제720조 소정의 방어비용에 해당된다. 만일 손해방지비용으로 본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어차피 책임이 인정될 사안이었다면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 아니어서 보상대상이 되지 않으며, 나아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보상한도액을 정하는 계약도 있는데, 이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보면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을 초과하더라도 보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도 변호사보수는 상법 제720조 소정의 방어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았는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에서는 당사자가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청구하였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변호사보수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된다고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위 대법원 2002다22106 판결의 사안은 피해자가 물에 빠지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줄이기 위하여 응급후송비와 치료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그 응급처치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대법원 2004다64272 판결의 사안 역시 유류 유출이라는 보험사고는 이미 발생하였고 유출된 유류가 하천이나 지중으로 계속 이동, 침투하여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킴으로써 손해가 확대될 것이므로 그 손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방제작업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됨에는 의문이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누수사고에 있어서 온수배관 분배기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온수를 쓰지 않고 물받이를 설치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면 이미 발생한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발생하거나 늘어나지 않으므로 온수배관 분배기의 수리는 장차 온수를 사용함으로써 새로 발생할 누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일뿐, 기발생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하고도 직접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법원 2002다22106 판결과 대법원 2004다64272 판결을 근거로 온수배관 분배기 수리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20-7호 조정결정은 ‘손해방지·경감의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방지·경감할 손해는 대규모로 발생하였거나 급격하게 진행되는 손해만으로 한정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면 그 손해의 규모가 작거나 점진적인 속도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방지·경감할 대상이 되므로 다량의 물이 급격하게 누출해서 침수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온수배관 분배기 수리가 장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한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계약자측의 손해방지의무는 손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긴급한 행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아파트 외벽 창문의 코킹이 노후화되어 있으면 빗물이 스며들어 아랫집에 누수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아직 비가 오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그 원인을 제거하는 비용(코킹 재시공비용)도 보상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이는 긴급성이 없는 일반적인 노후화된 건물을 수리하는 비용을 보상하라는 것이나 다를바 없게 된다.¹⁶⁾

그렇다면 위 조정결정을 근거로 보험회사가 난방배관 교체공사비용을 손해방
지비용 명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난방배관 교체공사비용은 피
보험자 스스로의 물건에 대한 수리를 함으로써 그 가치를 보전, 증대시킨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수선, 개량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감면시키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방수층 보수나 배관교체 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아 책임보험자가 보
상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대법원 2002다22106 판결의 사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응급후송비와 치료비뿐만 아니라 낚시터의 하자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고, 대법원 2004다64272 판결의 사안에서 유류가 유
출되지 않도록 고장난 시설을 수리하는 비용도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
하는 보험에서의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되게 되는 것이며, 자동차사고에서도 사고
가 난 자동차의 수리비도 대인배상 I, II의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된다는 수긍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주택이 노후화되어 배관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계약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파손된 배
관을 방치하여 추가로 누수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손해방지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상법 제651조, 제652조의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 위반의 문제가 되거나,
제659조 제1항의 고의·중과실 면책 사유의 해당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지 손해방지
비용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가 배관교체나 방수층 보수 공사비를 손
해방지비용 명목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16) 김현태/이경재, 앞의 논문, 479면.

V. 누수사고와 관련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대한 실무례

1. 하급심의 동향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가합104799 판결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담보 특약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운영하는 식당건물 지하1층 주차장 천정에 누수사고가 발생하자 피보험자가 지하주차장 천정 2곳을 뚫어 원인을 확인한 후 당일부터 약 5주 정도 식당영업을 휴업하고 배관교체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비용을 보험회사에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사고의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하는 비용, 사고피해의 계속이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긴급대응에 소요된 비용은 손해방지를 위한 직접적 비용으로 보아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 누수탐지비용, 지하물받이설치비용, 수도관노출조사비용, 누수라인배관 교체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포함하고, 주방장비 이전설치비용, 방수 및 시멘트, 타일공사비용은 피해의 계속이나 확산을 막거나 줄이는 데 기여도가 낮은 간접비용으로 보아 손해방지비용에서 제외하였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합107631, 112084 판결

피보험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화장실과 주방의 바닥 방수층이 파손되어 그 아래층 천정으로 누수가 발생하자 피보험자가 화장실과 주방의 바닥 방수공사를 실시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는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 공익의 보호,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형평,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에 대하여 지켜야 할 신의성실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요구되는 행위는 그 개념상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이익이 아니라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보험목적물의 수리는 비록 그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손해가 방지 또는 경감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방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다음, 해당 방

수공사는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영업장이자 보험목적물인 영업장을 보수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상법 제680조 제1항이 정한 손해방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방수공사비용에 대한 보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광주지방법원 2019. 10. 8. 선고 2018가단535165, 2019가단507921 판결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욕실 바닥층의 파손이 누수원인으로 추정되는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수침피해가 발생하자 피보험자가 누수지점으로 추정되는 안방 화장실 철거, 바닥누수 방지공사, 원상복구공사(이하 위 공사를 통틀어 ‘방수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한 사안에서, ‘① 약관에서 정한 “손해 경감 및 방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서 그 경감 및 방지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당해 기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비용 역시 기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경감 또는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향후에 재발할 사고를 대비하여 지출하는 보험목적물의 수리비용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보험목적물 건물의 방수공사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만약 보험사고 발생 후 그 전에 보험목적물에 보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하자를 부주의로 발견하지 않았거나 하자를 발견하고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약관 제9조 제2항 제1호¹⁷⁾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에서 경감 또는 방지할 수 있었던 손해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해석은 보험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③ 약관 제16조¹⁸⁾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기간 중 언제라도 피보험자의 시설을 점검하여 개선을 피보험자에

17) 위 사안에 적용된 보험약관 제9조(손해방지의무)에서는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18) 위 사안에 적용된 보험약관 제16조(조사)는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피보험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규정이 있는 점을 보면, 해당 약관은 피보험 건물의 하자보수에 관한 공사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보험목적물의 수리는 비록 그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손해가 방지 또는 경감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방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가 방수공사에 지출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보험자의 면책을 선고하였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단5180092 판결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담보 특약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누수가 되어 아래층 입주자가 피해를 입자 피보험자가 주방 철거, 주방 배관설비, 방수공사, 타일공사를 실시한 후 그 비용을 손해방지비용 명목으로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는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물건이 멸실·훼손됨으로 인해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물건보험과는 구별되므로, 책임보험에 있어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주방 방수공사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영업장이자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인 식당 건물의 주방을 보수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상법 제680조 제1항 및 보통약관 내지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한 손해방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하였다.

(5) 대구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319543 판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특약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주택 거실 부분

배관에서 누수가 되어 아랫집에 수침피해가 발생하자 피보험자가 거실 바닥철거 및 배관교체 비용 6,028,000원과 온돌마루 재설치 공사비용 3,365,000원, 합계 9,393,000원을 손해방지비용 명목으로 보상청구하였고, 보험회사는 바닥철거 및 배관교체 공사비용 6,028,000원에 대한 견적서중 배관교체작업 비용 항목에 해당되는 35만원과 보험회사가 책정한 통상적인 누수탐지비용 30만원, 합계 65만원만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보상을 거절한 사안에서,¹⁹⁾ ① 손해방지의무가 요구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나 예외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도 손해방지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일시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보험목적물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당장 추가적인 누수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없지만, 누수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가 지속되고 있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어 피보험자 등의 손해방지의무가 인정되며, ③ 누수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배관의 부분적인 수리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실 전체 배관을 교체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보험회사가 거실배관교체공사 견적서상 배관교체작업 공정비용 35만원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것은 거실 전체의 배관 교체가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④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주택의 일상적인 사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밸브를 잠가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사정은 배관교체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장래 발생 가능한 보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거실 바닥철거 및 배관교체 비용 6,028,000원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였다(온돌마루 재설치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6)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9653호 사건

가정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에서 누수가 되자 피보험자가 누수복구 조치를 취하였으나 한달 정도 지나 또 다시 아랫집으로 누

19) 위 사안에서는 피보험자가 누수공사업체에 누수지점으로 유력해 보이는 배관의 일부를 수리한 후에도 재차 누수가 발생하였다.

수가 되자 주택 바닥에 매립된 난방배관 전체를 교체한 후 그 공사비용을 손해 방지비용으로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누수탐지비용만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조정신청을 하였다가 조정이 불성립되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진행되었는데, 담당재판부는 보험회사의 누수탐지비용 지급책임만을 인정 하되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 3건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당 보험회사가 중복보험자로서 3건의 보험계약에 각 안분된 1/3의 누수탐지비용만을 부담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2.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누수사고의 경우 밸브를 잠그고 물받이를 설치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여 누수가 중단되면 그 시점에 손해방지의무의 이행도 완료되는 것이고, 그후 배관교체나 방수층 보수와 같은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다시 밸브를 틀지 않는다면 '제3자의 수침피해'라는 보험사고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배관파손 부위를 수리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2020나319543 판결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에 계속 물을 써야 하므로 물을 쓰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치(밸브를 잠그는 등)만 손해방지의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계속 물을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즉 배관교체공사를 하고 방수층 보수공사를 하는 비용 전체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다른 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의무의 인정요건을 다르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각종 영업장(헬스장, 식당, 공장 등)에서도 물을 계속 써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2020나319543 판결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대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후 대법원 2021다201085, 201092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대구지방법원 2020나319543 판결을 토대로 확일적으로 배관교체비용, 방수층 보수공사비용 전부를 손해방지비용 명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VI. 나가며

노후주택의 경우 배관 곳곳에서 시차를 두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누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피보험자가 처음부터 배관 전체의 교체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누수의 원인이 된 배관 부분의 수리비만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할 경우 해당 부분만 놓고 보면 그 금액이 매우 적으므로 보험회사로서는 특별히 법률검토를 거치지 않고 보상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를 계속 지급하다보면 종국에는 배관 전체의 수리비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회사가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보상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동안 누수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하급심마다 결론을 달리 하고 있었으나, 대법원 2021다201085, 201092 판결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누수사고는 발생 부위와 원인, 피해의 내용, 복구공사의 범위 등이 개별사안마다 전부 다르고, 이런 점을 감안하여 대법원도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방지비용의 인정범위를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계약자측이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손해방지비용의 인정범위는 보험계약자측의 손해방지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밖에 손해방지의무의 요건, 책임보험의 성질, 상법 제678조와의 관계 등 관련법리에도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누수사고에서는 아랫집으로 물이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손해가 현실로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누수지점과 누수원인을 탐지하고 수도꼭지를 잠그고 아랫집 천정쪽에 임시로 물받이를 설치하면 더 이상의 누수피해가 발생할 위험은 소멸되므로 그 시점에서 손해방지의무도 종료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후 장차 발생할 아랫집의 수침피해를 막기 위하여 배관교체나 방수층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자신의 물건에 대한 수리비용 또는 향후의 사고예방비용이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박세민,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15.
-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4.
- 유주선, 「보험법」, 청목출판사, 2013.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9판, 박영사, 2015.
- 장덕조, 「보험법」 제3판, 법문사, 2016.
- 최기원,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02.
- 한기정,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21.

[논문]

- 김선정,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30집 제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 김현태/이경재, “누수사고의 보험보상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 김화중,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 범위에 대한 검토·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 201085, 201092 판결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35권 제3호, 2022.
- 박인호, “손해방지의무와 손해방지·경감비용에 대한 고찰·책임보험을 중심으로”, 「보험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 이성남,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 조규성,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인정범위에 관한 고찰-누수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을 중심으로-”, 「법과기업연구」 제11권 제3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Abstract>

**Study on scope of damage prevention costs in
water leak accidents**
**- Focusing on the 2021Da201085 and 201092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on March 31, 2022 -**

Kim, Hye Young*

The Commercial Act Article 680, Paragraph 1, stipulates that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ed must make efforts to prevent and reduce damage. In addition, it is stipulated that even if necessary or beneficial costs and compensation exceed the insurance amount, the insurer shall bear them.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where insured persons who have signed up for daily life liability insurance replace pipes or perform waterproofing work when a water leak occurs and then claim insurance money as damage prevention costs.

The rulings on this all come to different conclusions. However, the 2021Da201085 and 201092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on March 31, 2022 states that water leak detection costs, costs related to prevent damage to third parties directly caused by water leaks and construction costs related to work to prevent the expansion of damage that has already occurred to third parties may be considered damage prevention costs.

But the 2021Da201085 and 201092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on March 31, 2022 also pointed out that the scope of damage prevention costs caused by water leakage accidents needs to be judged individually for each specific case. Basically, damage prevention costs are the costs required for the policyholder to fulfill the damage prevention obligation, so the scope of damage prevention costs needs to be reviewed in connection with how far the policyholder's damage

* BELIGHT LAW OFFICE, Attorney at Law.

prevention obligation will be extended. In addition, it must be permitted within the limits of not being contrary to relevant legal principles, such as the requirements for damage prevention obligations, the nature of liability insurance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Commercial Act Article 678.

In that case, if the insured detects the point and the cause of the water leak, turns off the water and temporarily installs a water tank on the ceiling, the risk of further water damage disappears, and the damage prevention obligation ends at that point. Afterwards, the insurer is not obligated to compensate for pipe replacement or waterproofing layer repair work to prevent future water damage to the house below, as these are repair costs for the insured's own property or future accident prevention costs and cannot be considered damage prevention costs.

Key Words : Water leak accident, damage prevention cost, damage prevention obligation, liability insurance, prevention of damage expansion.